

이혼의 사회적 배경 고찰

—Divorce in Societal Context—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정옥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박경규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Women's Univ.

prof.: Jung-Ok Kim

Lecturer: Kyung Gyu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이혼증가의 사회적 배경 |
| II. 이혼제도의 史的배경 | IV. 요약 및 결론 |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anging norms concerning divorce in societal context of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hanges in divorce norms were particularly striking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raditional society, there are various divorce norms according to each era. In Sam Kuk era, there is not the norms of divorce, but there is norms of divorce by Yea Keu ideology in Gorea era. During the Zo Sun era, the strict restrict seven possible norms and three overriding ones for divorce rates significantly rose in after the industrialization in response to the continuation of such social changes as greater participation of women in labor force, increased alternative to traditional marriage, the declining stigma attached to divorce, and the rising standard for individual happiness in marriage and so on. Divorce rates are also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geographic differences, and variou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 서 론

지난 40년간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동안의 광범위한 사회변동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족제도의 변화도 포함된다.

가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8·15해방 이후 지금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서, 가족도 가구형태와 가족구성원의 인간관계등 여러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성형태는 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되었다. 복합적인 기능은 축소되고 대부분의 주요기능은 전문적인 사회제도로 이관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변화이다. 중세사회자체가 권위주의적 原規(more)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것처럼 가족 내부의 인간관계도 家長 중심의 권위주의적 原規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질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유형은 소멸되고 평등과 협력을 전제로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가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수반되어 가족집단에 내재하는 문제점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가족의 불안정이란 새로운 가족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가족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의 하나로서 증가된 이혼가정의 출현현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한 예로써 모자가정의 발생추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별은 1971년도 87.0%에서 1988년도의 64.3%로 점차 감소하고 생별 특히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은 1971년도 4.2%에서 1988년도 19.9%로 급증하였다(여성백서, 1991).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이혼통계(1991)에 의하면 인구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

vorce rate)은 1970년대 초반에는 0.4에서 80년대 초에는 0.8, 90년대 초의 최근에는 1.1수준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혼은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한 혼인관계의 해소로서 이혼에 따르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족원에게 곤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Good, 1969)이라는 의미와 결혼 존속의 필수품(Hunt and Hunt, 1977)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혼의 출구없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행한 결혼을 더이상 참을 수 없으며 행복한 결혼생활로 대치하려는 희망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다(Lamanna and Riedmann, 1991). 1970년대에 이혼한 미국인 중 80%가 결국 재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는 신경증 환자(neurotics)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Good, 1956),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사건(stressful life events)중의 하나인 것으로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Hetherington, Cox and Cox, 1978; Holmes and Rhae, 1976; Price and Mckenry, 1988; Raschkke, 1987).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거에는 이혼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가에 대한 史的인 배경과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혼제도의 史的배경

1. 미개사회에서의 이혼

미개사회에서는 이혼이 절대적으로 부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었다. 40여개의 본질적으로 소규모이고 비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는 비유럽사회(non-European societies)의 이혼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회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이 되었던 모든 사회에서 결혼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G. Murdock, 1950). 인류학자들은 모계사회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고 있었고 부계사회에서는 이혼이 어렵고 빈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모계사회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친족에게 결혼지불금·신부값(marriage payment, bride-price)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권적 의미의 대인적 지배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혼인의 결합도는 비교적 약했다. 그러나 부계사회에서는 혼인시 남편 또는 그의 친족들이 아내의 친족에 대하여 신부값을 贈物로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신부값은 이혼할 때는 반환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다. 신부값이 지급되면 妻쪽의 친족은 신부를 다시 데리고 갈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청구에 의한 이혼에 의하여 혼인결합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妻의 친족은 신부값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미 양도한 신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부값은 다소나마 혼인결합의 안정을 확보할 기능을 가졌다. 신부값은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결혼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그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개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은 보다 더 빈번하였을 것이며 신부값이 소액일수록 이혼이 많아지고 그에 관여하는 친족이 많을수록 혼인의 보호는 약화되었다(James, 1952).

그러나 Evans-Prichard(1934)는 이혼율과 신부값의 액수의 다소와의 상관관계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부부결합의 안정성은 경제상의 차취로부터가 아닌 법 및 도덕에 의하여 가해진 제약으로부터 초래된다. 따라서 미개사회에서의 신부값의 다소가 이혼율에 있어서 중요성이 그다지 없는 제2차적인 의의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2. 한국 전통·현대사회에서의 이혼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이혼에 관한 관습법과 법적규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고시대의 이혼은 발견된 기록이 없으나 삼국시대에 이미 중국과 같은 혼속이 행하여졌던 것과 함께 이혼에 대하여 유교적인 생각이 전해졌던 것 같다. 부권의 확립과 함께 부녀의 지위가 예속적으로 됨에 따라서 남자전권의 無因이혼이 행해진 것은 인류의 일반 혼인사실에 비추어 쉽사리 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풍속에 婦人犯姦者, 入夫家僞婢(北史 第94券 百濟傳)라고 한 것으로 보아 犯姦으로 인하여 正妻의 지위를 상실하여 버린 경우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夫婦大倫의 禮教가 존중되어 삼국시대에는 함부로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도덕관념이 妻를 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있으나 夫의 권력이 강대하여 용이하게 妻를 축출할 수도 있었다. 한편 신분의 제약이 엄격하던 사회이니 만큼 혼인의 사회적인 공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귀족과 평민이하의 계급의 여인과의 결합은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만큼, 그 관계는 낮은 계급녀와의 혼인이 일반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사리 해소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離婚의 法制라고 할 만한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강대한 夫權에 의하여 용이할 수 있었을 妻의 離黜은 단지 일반의 관습이었던 多妻制 또는 複妾制로 인하여 壽妻의 필요가 그리 없었으므로 壽妻제에 관한法制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新羅統一期 이른바 中代동안에 3건의 이혼사실(神文王妃 金氏, 聖德王妃 成貞王后, 聖德王의 아들 景德王先世己 三毛夫人)이 전하고 있다. 이 3건의 王妃 離婚이 中代에 집중되고 있음은 尊大해진 家父長權과 男系 嫡子로의 承襲등과 관련이 있다.

이 밖의 離婚의 實例는 전하는 것이 없으나 이 시대에 있어서는 (1)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편이었고 (2) 계급의 차이가 있는 혼인관계, 正室이 아닌 혼인관계는 주변의 압력등으로 해소되기가 더욱 쉬우며 (3) 친정가족이 죄를 저지른 경우 (4) 대를 잇지 못할 경우 혼인 해소 되었다(한국여성사 I, 1972).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예교적 관념에 의하여 이혼이 제한되고 있었다.夫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강제적 이혼이 때때로 행하여 지고 있었던 것은 왕실에 있어서의 폐비의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혼에 관한 규범이 좀 더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高麗刑律中 戸婚律 4개조의 이혼에 관한 것을 보면 1) 간통한 처는 강제 이혼 할 수 있으며 2) 부모의 승락 없이 처를 버린자는 관리로서의 직업정지 처분을 당하며 3) 남편을 버리고 나간 여자는 형벌을 가하되 正妻인 경우에는 妾인 경우보다 重하게 취급한다라는 3가지 항목이 있었다. 이와같이 남자는 이유없이 처를 버려도 부모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승락 없이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되 그 제재도 관리법상의 형사벌이 아니고 행정벌이었다. 그러므로 그 제재의 목적이 처를 버렸다는 것에 있지않고 부모의 승락을 받지 않았다는 불효에 대한 제재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시대에는 태조이래 중국의 대명률의 七出三不去의 律이 離婚制度의 지배원리가 되어 있었다. 조선조 시대의 이혼제도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제한주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은 일정한 사유(法定原因: 七去事由)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혼(棄妻)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무리 法定事由가 있다할지라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事由(離婚原因 阻却事由: 三不去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고 까닭없이 葉妻한 者에게는 처벌주의로 대하였다. 조선시대의 일반적 법정이혼 원인은 대명률에 규정된 七出과 그 제한은 三不去이다. 七出이 大戴禮記의 『嫁女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姤去 有惡疾去 口多言去 糜盜去』를 말한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질투했을 때, 나병등의 악질의 질병이 있을 때, 말이 많을 때, 절도를 했을 때 남편은 처와 이혼 할 수 있었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요, 자식이 없음은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에 위반되는 일이다. 음질은 혈통의 순결과 남성의 독점

욕을 침해하는 것이며 질투는 충첩제도에 방해가 되며 악질은 자손번영에 유해하다. 그리고 다언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 개인으로 부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계승하는 「집」 자체가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부인은 집의 후계자로서의 자식을 생산하는 주요 목적을 다하는 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전 가족과의 화합이 의무로 부과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7가지 원인 중 다언과 절도에 관해서는 이조실록에 어떤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 중 절도만을 범죄행위로서 본인의 有責事由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六個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일정한 法定사유 외에도 이혼의 사유로서 逆家離婚이라는 것도 있었다. 즉 七出原因외에 妻族 특히 그 家長이 반역죄에 처하였을 때 그 罪禍가 夫族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 이것을 이유로 妻를 이혼 시킨 제도이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義絕)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처벌을 받는 제도로서 義絕離婚이 있어 義絕사유가 있을 때 法律上 강제로 이혼케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습속으로서 事情罷議와 割給休書가 있다. 사정파의는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여 이혼함을 인정한 것으로서 현대의 협의이혼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상은 남편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지나지 않았고 서민계급에서 이러한 관습이 성행되었다. 할급휴서는 이혼할 때 저고리 것 한조각을 잘라서 이혼의 증명서 격으로 주는 것인데 그 조각을 「휴서」라 한다. 이 풍속은 상민 계급에서 오랜 세월동안 내려오던 풍속이다. 그리고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이혼서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세조실록, 제30권, 14-64). 또한 이 시대에는 정식이혼은 아니면서 이혼과 다름없는 독특한 풍속인 소박이 있으며 소박은 내소박도 있고, 외소박도 있지만 대체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봉건적 사회풍토에서는 남편에 의해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혼이란 말 대신에 逐妻(축처), 「갈라서다」 또는 離妻(출처)라는 말도 있다. 비록 「갈라서다」라는 동격적 (피동과 사역의) 용어가 쓰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현

상의 표현에 불과하다. 축처(출처)라는 말도 「처를 내쫓는다」는 뜻임을 볼 때, 옛날 이혼의 형태가 대부분 여자쪽의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七出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지라도 三不去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离婚을 금하는 경우는 있다. 三不去라 함은 大戴禮記 卷13本令 第80의 『婦有三不去有所娶無所歸不去 與共更三年喪不去 先貧踐後富貴不去』에서 나온 것이다. 처가 이혼 당한 후 복귀할 집이 없는 경우, 남편의 부모를 위하여 3년상을 지낸 경우, 결혼당시 빈천하다가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에는 칠출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이혼 할 수 없었다. 三不去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혼을 금지시켰던 사례가 李朝實錄에 허다하다. 그러나 처가 간음한 때 또는 악질이 있을 때는 의절(강제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불거에 무관하게 이혼할 수가 있었다. 조선조 말기에는 七出三不去의 이혼법이 五出四不去로 되었다. 즉 七出중 무자와 질투의 두 사유는 문제된 바가 없으므로 光武 9년(1905)형법대전 제정 시에는 이를 삭제하여 五出로 정하고(刑法大全 第578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첨가하여 四不去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은 隆熙 2년(1908) 형법대전 大改正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법정 이혼원인과 제한사유는 夫 内지 夫家側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제한을 규정한 법규이며 妻 内지 妻家에서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남녀평등한 사유는 아니었다. 妻側의 이혼청구는 특수한 경우 처를 소박하고 구타 학대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子(혼인한 당사자)가 이혼한다기 보다 父 아니면 家長이 이혼의 주동자였고 父가 이혼을 명할 때에는 자식은 그 명령에 복종치 않을 수 없었다.

李朝社會에서의 离婚制度는 夫 및 夫家에서 妻를 쉽게 이혼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妻는 이혼을 청구 할 權利마저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离婚의 제안자도 남편 本人이 아니고 남편의 父母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5年 協議離婚이 認定되었고 1918年 4월 11일 日政京城覆審 法院判決은 「한국의 관습상

부부는 남편의 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방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离婚의 自由가 인정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男子측에 일방적으로 인정되던 것이 여자측에도 인정되었다. 또한 이혼의 主動者는 父母가 아니고 당사자이며 단지 同意權만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부부간의 협의이혼이 부모의 同意權下에 可能하게 되었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여성도 이혼청구권을 갖도록까지 발전된 것이다.

그 후 1921年 조선 민사령 제 11조의 一次 개정으로 裁判上 이혼제도를 채용하게 되어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가 한층 상승된 것이다. 당시 채용된 이혼원인을 보면(日本國 警民法 제813조) ①配偶者の 重婚, ②配偶者の 嫁通, ③배우자의 處刑, ④配偶者로 부터 同居에 堪耐하기 어려운 학대 또는 중요한 모욕을 받았을 때, ⑤配偶者로 부터 惡意의 遺棄를 당한 경우, ⑥배우자의 直系尊屬으로부터 배우자의 直系존속에 대한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 있을 때, ⑦배우자의 生死가 3년 未分明할 때, ⑧婿養子寵養時에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이혼조건이 있었으나 여자에게 불리했던 점이 많았다. 즉 종래부터 夫가 맺어온 축첩 상태는 이혼 원인이 될 수 없었고, 배우자의 간통의 경우에도 妻가 간통을 할 때에는 夫로부터의 이혼청구 원인이 되지만 妻는 夫의 간통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夫가 간음죄로 형에 처했을 때만 妻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이혼청구에서의 남녀불평등 상태가 남아 있었다.

現行 民法은 이혼에 대하여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夫婦는 協議에 의하여 离婚할 수 있다」(民法 제836조), 「協議離婚은 戸籍法에 정한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836조 1항)고 하였다. 协議離婚制度는 李朝時代의 男子에 의한一方의 이혼요구에 비하여 반드시 夫婦의 合意下의 이혼이므로 妻의 地位向上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离婚意思의 합치란 契約 當事者間의 優越性과 劣弱性의 갭이 적을 수록 그 保障度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协議離婚 당사자는 마치 資本家와 勞動者的의 雇傭契

約의 경우처럼 優越性과 劣弱性의 對立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離婚의 意思를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現行 협의이혼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夫婦의 本質的平等觀念에逆行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보면(民法 제840조) ① 배우자에 不貞한 行爲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惡意로 다른 일방을 遣棄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不當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이 모든 이혼조건은 夫婦雙方에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III. 이혼증가의 사회적 배경

부부와 가족을 결합시키는 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Lamann and Riedmann, 1991)과 같이 가족을 해체시키는 데 즉, 이혼을 하게 되는데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초래되는 측면과 사회·경제적 조건, 지리적 조건,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산업화의 영향

이혼은 1장(전통사회에서의 이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혼전수도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현대화(modernization)와 가족의 변화 및 해체화의 관련을 지적하고 있다(Nimkoff, 1965; Harven, 1976; Lee, 1982).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혼의 증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Nimkoff, 1965)이며 산업화는 성취성(achievement), 보편성(universalism), 특이성(specificity), 감정적 중립성(affective neutrality) 그리고 자

기 중심성(self-orientation)의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켰다(Kerckhoff, 1972). 사회구조는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혼율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Trent and South, 1989).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된다는 이론이 거의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첫째, 부부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약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경제적 생산단위이자 소비단위로서 자급자족의 생산단위(self-sufficient productive unit)이었으므로 가족을 떠나서는 개인의 생존은 어려웠으며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수단의 변화로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압력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에도 종종 머물러 있어야 했다.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교육 기회의 증가 및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여성의 취업기회 증가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게 되어 결혼이 보다 선택적이 되었다.

둘째,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의 약화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까십(gossip)으로부터 법에 이르는 여러가지 사회통제수단이 가족성원들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빈번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은 사회통제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무결점 이혼법(no-fault laws)이나 협의이혼(민법 834조)은 사회가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법이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인들의 태도 또한 과거보다는 이혼에 대하여 덜 비판적으로 보며 이혼을 도덕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Lamanna and Riedmann, 1991).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여성(부인)들의 태도로서 41.9%가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1990). 따라서 이혼이 증가되는 배경에는 이혼을 억제하는 여러측면의 장치가 약화됨과 동시에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붕괴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 즉, 이상주의적인 결혼관과 낭만적인 이혼의 신화이다.

먼저 이상주의적 결혼관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부부들은 보다 애정적인 표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부부들 보다 결혼생활에 더 만족했다(Troll and Atchley, 1979).

배우자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 높은 기대는 이혼율을 높게 한다. 한 상담자의 말에 의하면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이 이혼하지 않은 다른 결혼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부관계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기대와 막연한 불만 때문이다.”라는 지적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 즉 결혼의 신화적인 요인이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Framo, 1979).

그리고 이혼자들은 결혼의 이상적인 신화(the myth of the ideal relationship)와 함께 이혼의 낭만적인 신화(the myth of romantic divorce) 속에 있다. 낭만적인 이혼의 신화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스트레스와 갈등이 더 줄어들고,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자기 발견의 기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Hetherington, Cox & Cox, 1978).

넷째, 결혼 자체의 성격의 변화이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후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였다고 한다(Lamanna and Riedmann, 1991).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지속되는 결혼과 지속적인 “관계”(relationship)의 결혼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제도적인 이점(institutional benefits of marriage)이상의 관계자체를 강조하면 결혼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만약 애정에만 근본을 둔 결혼이 도덕적이라면, 애정이 있는 결혼만이 계속된다. 따라서 애정이 식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열정적인 사랑이 대치되면 헤어진다는 것이 사회 뿐만 아니라 양배우자에게도 유익할 것이다”(Engels, 1942). 그런데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애정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되지 못한다.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부부로서의 의무와 동일계층, 동일종교 내에서의 결혼이 제 2차적 중요성을 가질 때 이혼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Reiss, 1980). 감정적인 지지나 욕구충족으로 맷계된 인연은 그 관계가 쉽게 붕괴되고 무너지기 쉽다(Kitson 팀, 1985). 특히 개인주의, 자기성취, 개인만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애정에 바탕을 둔 결혼관계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소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가족은 당연시 되어왔던 역할 구분이 덜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부부간에 더 많은 다툼이 생기게 되고, 지배 대신 협력이 특징화되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협상, 재협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가족은 상호성과 참여자간의 조화를 요구하는 다른 평등한 관계와 같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으며, 부부관계는 좀 더 실용적이고 더 가변적이고 혼란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한남제, 1991).

2. 사회·경제·지리적 조건

1) 사회적 조건

사회적 혼란 특히 전쟁은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동안에 이러한 현상이 명백했다. 즉 1860년에는 7,380명이 이혼하였고 1865년에는 10,090명이 그리고 전쟁 후 1866년에는 11,530명이 이혼하여 전쟁후 최고점에 달했다.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전쟁으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는 몇 가지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전쟁동안 단기간의 구애기간과 전쟁으로 인하여 장기간 부부가 떨어지게 되어 혼외 성관계의 기회가 증가하여 이혼율 증가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혼을 연기해 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부부의 재적응이 힘들다는 것을 밝힌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Hill, 1949; Leslie, 1982)도 한가지 전쟁으로 인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혼율 연구Ⅱ(이태영, 1987)의 자료에 의하면 조이혼율(粗離婚率)이 0.88(1951년), 0.11(1952년), 0.11(1953년)로 다소 완만한 증가의 폭을 나타내 주었으나 1954년에는 조이혼율이 0.20, 1955년에는 0.27로 나타나 다소 상승을 하였다. 혼인수와 이혼수와의 관계를 보면 1953년에 혼인수가 83,879건과 이혼건수는 2,444로 나타났고, 1954년에는 혼인수가 176,436건 이혼건수는 4,294로 나타나 전쟁이라는 요인이 이혼율 상승에 중요 인자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성격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조건

경제적인 조건이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은 경제적인 주기를 따른다(Price and Mckenry, 1988). 경기가 후퇴하고 침체되는 시기에 이혼율이 낮고 호황기에 이혼율이 높다. 경기가 저조할 때 이혼율이 낮은 것은 이혼시에 비용이 개입되고 분가된 가구를 유지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이 제한될 때 이혼이 억제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67년의 급격한 이혼율 상승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완성된 단계로서 경제적인 호황과 이혼율과의 긍정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겠다.

3) 지리적 조건

이혼율은 거주지가 도시인가 시골인가 그리고 지리학적인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도시 지역이 이혼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시골 즉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homogeneous communities)에서 이혼율이 낮고 익명과 단절된 인간관계인 이질적인 사회(heterogeneous communities)에서 이혼율이 높다(Eshleman, 1985). 시골지역과 같은 1차적인 사회(primary communities)에서는 이혼과 같은 일탈된 행동에 대하여 제약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도시 지역과 같은 이질적인 사회는 개인의 삶에 대하여 통제가 훨씬 더 적다. 그

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여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므로 여성들에게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떠날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Nye and Berardo, 1973).

이혼율 또한 지리학적인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북동쪽(northeast)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고, 중서부·남부·서부의順으로 낮다. 이러한 지역적인 변이(variations)에 대한 설명은 보다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남부, 서부)에 있어서의 태도와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포함한다.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덜 전통적인 형태를 따른다. 그들은 다세대적인 혈족과 우애집단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남부지역에 이혼율이 높은 특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부와 남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결혼율이 높아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부와 서부지역의 종교적인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교적 이혼율이 낮은 Roman Catholic과 Jewish Populations이 북쪽과 동쪽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Glenn and Suspanic, 1984).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본 이혼율은 통계청(1991)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의 경우 조이혼율이 부산이 1.54로 가장 높고 인천(1.30), 서울·대구(1.22), 대전(1.13), 광주(0.90)의順이었고 충남이 0.60, 전남이 0.57로 대도시 지역의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 지역이 타지역보다 이혼율이 높은 것은 항구도시로서 젊은 세대들의 이동속도 및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치와 태도면에서 전통적인 경향을 벗어나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덜 속받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인구학적인 특성

1) 초혼시기의 연령

20세 이하에서 결혼한 집단이 비교집단인 20대에 결혼한 집단보다 이혼율이 2-3배 더 높다(Alan Guttmacher Institute, 1981; Norton and Moorman, 1987). 젊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보다 미성숙하고 결혼에 대한 책임이 회피하며 젊은 연령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① 하류계층에 갈수록 많아지고 ② 혼전임신으로 결혼의 동기가 부여되고 ③ 불행한 가족생활의 도피와 같은 애매한 이유로 성급히 결혼하고 ④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들과의 결혼이 많다(Furstenberg, 1976; Glenn and Suspanic, 1984)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연구는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20대에서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높다고 제시한다.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역할의 요구와 갈등이 되는 독립적인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지체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들의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소득을 가진 직업(careers)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Raschke, 1987).

2) 결혼지속연수

결혼한지 4년이내에 이혼한 사람은 약38%이고 이혼자 중 64%가 결혼한지 9년 이내에 이혼했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86). 결혼생활의 실질적인 붕괴는 보통 이혼전에 시작되었다. 결혼 3·4년째에 이혼한 대부분의 결혼들은 실제로는 1·2년이내에 일어났던 분리일 수 있다. 그리고 20년 혹은 그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집단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집단들의 이혼한 숫자는 지난 20년동안 거의 2배가 되었다(Block 등, 1980).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이 기간동안 미국의 결혼율의 증가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혼 5년 이내의 이혼이 1989년의 경우 36.0%로 가장 높고 5년-10년이 31.1%, 10-14년이 19.1%, 15-20년이 8.5%이다. 이러한 비율은 1985년의 이혼율 즉 5년 미만이 46.3%, 5-10년이 28.2%, 10-14년 미만이 14.2%, 15-20년 미만의 6.9%와 비교해 볼 때 최근 동거기간이 긴 연령층에서의 이혼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가의 폭은 급격하지 않았다.

3)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간에는 부적인 관계이다(Cutright, 1971; Scanzoni, 1979).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이혼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결혼생활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보다 많은 개인적 재정적인 문제가 결혼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소득과 이혼과의 관계는 의문을 던진다. 낮은 소득이 이혼을 야기시키는지? 이혼이 낮은 소득을 초래 하는지?(Price-Bonham and Balswick, 1980) 또한 실직의 경력과 재정적인 불안정이 사회계층 그 자체 보다 이혼을 더 예측할 수 있다(Ross and Sawhill, 1975). 미국의 경우 1960과 1970년의 센서스 자료와 1975년의 Marital History Survey의 자료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혼율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Leslie and Leslie, 1980)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의 이혼율의 상당한 증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의 이혼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4) 종교

이혼율은 또한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서 다양하다.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이혼율이 낮다. 그러나 별거하는 부부는 카톨릭 집단에서 더 높다(Glenn and Suspanic; 1984). 그리고 종교성(religiosity), 교회참가 빈도수와 활동수는 이혼과 관련되어 있다. 즉 종교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Teachman, 1983).

I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개사회에 있어서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용이하게 행하여진 것은 아니며, 이혼을 저지하는 요인은 많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개사회의 이혼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미개가족과 그 주위의 사회구조와의 관계 즉, 가족의 안정성이 사회구조의 안정성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에 귀착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대 부권사회에 있어서는 서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은 오로지 남편의 전권이혼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유럽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사상, 불란서 혁명 및 자유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남편의 전권이혼이 비교적 빨리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이러한 영향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사회로부터 조선조 사회에 이르기 까지 오랜 세월동안 남편의 전권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한국전통사회에서는 이혼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혼에 관한 관습법과 법적 규제를 통하여 이혼에 관한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상고시대에 있어서는 남자전권의 無因 이혼이 행하여 졌고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일반의 관습이었던 多妻制 또는 蕃妾制로 인하여 妻妾의 필요가 없었으므로 妻妾制에 관한 法制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예교적 관념에 의하여 이혼이 제한되고 있었고, 조선조 시대에는 태조이래 중국의 대명률의 七出三不去의 律이 이혼제도의 지배적 원리가 되었으므로 조선조 시대의 이혼제도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제한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조 말까지 여성은 일반적으로 이혼내지 義絕을 당해왔고 일제시에는 남성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이혼이 이루어 졌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남녀 평등주의에 입각한 이혼법이 통과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혼증가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산업화 과정과, 사회·경제적 조건, 지리적 조건, 인구학적인 특성들이 관련되었다. 산업화로 부부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약화된 점, 사회적·법적·도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장치들의 약화 및 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와 이상주의적인 결혼관과 낭만적인 이혼의 신화, 결혼자체의 성격의 변화 등이 있다.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혼란 특히 전쟁시에 미국사회에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25사변의 전쟁 사건은 이혼율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전쟁의 성격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서의 경기가 후퇴하고 침체되는 시기에 이혼율이 낮고

호황기에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7년의 급격한 이혼율 상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완성된 단계로서 경제적인 호황과 이혼율과는 궁정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지리적 조건으로서 도시지역이 시골 보다 이혼율이 높고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이 덜 전통적인 형태를 따라 이혼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구학적인 특성으로서는 초혼시기, 결혼지속연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이 이혼 발생과 관련있는 변수로 지적되었다.

【참고문헌】

- 1) 대한통계협회(1991), 인구동태통계연보.
- 2)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 3) 이태영(1987), 이혼율연구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92), 「한국여성사」 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5)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제2권, 세조실록 7권, 세종실록 32권.
-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 7) 한남제(1991), 현대 사회 문제론, 한국사회학회 편.
- 8) Alan Guttmacher Institute(1981), Teenage Pregnancy: The problem that hasn't gone away. New York: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 9) Block, M.R., J.L. Davidson & J.D. Grambs(1980), Women Over Forty. New York: Springer.
- 10) Cutright, P.(1971), Income family events.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291-306.
- 11) Engels(1942),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International.
- 12) Eshleman, J.R.(1985), The family: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 Bacon.
- 13) Evans, E.E., Prichard(1934), Social character of bride-weal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zande,

- man, xxx iv.
- 14) Framo, L.(1979), The friendly divorce, Psychology Today, 11: 77-80, 99-102.
 - 15) Furstenberg, F.(1976), Premarital pregnanc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SocialIssues 32: 67-86.
 - 16) Glenn, N.D. & M. Suspanic(1984),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563-575.
 - 17) Good, W.J.(1956), Woman in divorce, New York, The Free Press.
 - 18) Good, W.J.(1969), Women in divorce, New York, Mac Millian Company.
 - 19) Harven, K.(1976), Modernization and family history: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Singn 2: 190-206.
 - 20) Hetherington, E., Cox, M., Dc Cox, R.(1978),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10, 42-46.
 - 21)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Row.
 - 22) Holmes, T. & R. Rahe(1976),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23) Hunt, M.W., and Hunt.B.(1977), The divorce experience, New York: Mcgrawhill.
 - 24) James, E.O.(1952), Marriage and society.
 - 25) Kerckhoff, Alan C.(1972), The structure of conjugal relationships in industrial societies, cross-national family research. Leidman, The netherlands: E.J.Brill.
 - 26) Kitson, G.C., Babri, K.B, & Roach, M.J.(1985), Who Divorce and Why, Journal of Family Issues, 6(3), 255-293.
 - 27) Lamanna, M.A, & Riedmann A.(1991), Marriages and families, 4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28) Lee, Gary R.(1982), Family structure and interaction: A comparative analysi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29) Leslie, G.(1982),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0) Leslie, G.R. & E.M. Leslie(1980), Marriage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John Wiley.
 - 31) Murdock, G.P.(1950), Family stability in non-european cultures, Annals, vol. 272.
 - 32)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September 25, 1986),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33) Nimkoff, F.(1965), Comparative family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 34) Norton, A.J. & J.E. Moorman(1987), Current trends in marriage and divorce among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14.
 - 35) Nye, F.I. & F.M. Berardo(1973), The familiy: Its Structure and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 36) Price-Bonham, S. & J.O. Balswick(1980), The noninstitutions: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225-238.
 - 37) Price & Mckenry, P.(1988), Divorce, Beverly Hills: Sage.
 - 38) Reiss I.(1980), Family systems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rd ed.
 - 39) Ross, H. & V. Sawhill(1975), Time of transition: The growth of families headed by wome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40) Scanzoni, J.(1979), A historical perspective on husband-wife bargaining, power, and marital dissolution, in G.K. Levinger and O.C. Moles (eds.) Divorce and Separation: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 41) Teachman, J.(1983), Early marriage, premarital fertility, and marital dissolution: results for Blacks

- and Whites, Journal of Family Issues 4: 105-126.
- 42) Trent K. & South S.J.(1989), Structural determinants of the divorce rate: A cross-socie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May)(2), 391-404.
- 43) Troll, E., Miller, S.J., & Atchley, R.C.(1979), Famili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